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90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광희 · 서미화 · 전진숙
김문수 · 안태준 · 이주희
박지원 · 임미애 · 송재봉
양부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항(중전의 제18항) 중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를 “원재료의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또는 직접노무비가”로 한다.

⑱ 이 법에서 “직접노무비”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무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에너지”를 “에너지, 직접노무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노무비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조등의 위탁 또는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⑰ (생략)	제2조(정의) ① ~ ⑰ (현행과 같음)
<u><신설></u> ⑱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⑱ 이 법에서 “직접노무비”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무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⑲ -----원재료의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또는 직접노무비가-----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	② -----

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u>에너지</u>,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략) ③ ~ ⑫ (생략)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에너지, 직접노무비</u>----- ----- ----- -----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	--